

-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 - 필기시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제35조(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)의 규정에 따라, 2017년 하반기 울산광역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의 일시·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18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. 시험일자 : 2017. 10. 28.(토)

구 분	시험시간	필기시험 과목
경력경쟁 채용시험	<u>10:00 ~ 11:00</u> (60분)	필수(3) : 국어, 생활영어, 소방학개론

※ 필기시험 응시자는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에 반드시 입실 하여야 합니다.

2. 시험장소 : 월평중학교(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4번길 31)

3. 응시자 준수사항 <일반사항>

- 응시자는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시험당일 09: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
※ 지정된 시험장소 및 시험실에서만 응시가능하며 시험당일 08:00부터 시험실에 입실 할 수 있습니다.
-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한 여권 중 하나)을 소지하여야 하며,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시험장 출입문 폐쇄 후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.
(09:25 시험장 출입문 일괄 폐쇄)

- 가산점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으므로,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(2017. 10. 27.)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local.gosi.go.kr>)에 가산점 정보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.
-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,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,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배탈·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**재입실이 불가**하며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.
- 시험 중에는 휴대전화, 태블릿PC, 녹화기능이 탑재된 기기(안경 등), 스마트시계, 무선호출기, MP3,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으며, 시험도중 휴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하고 퇴실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장(시설 전체)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,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고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**응시생 차량은 학교내 출입을 통제 합니다.**
- 시험시간 관리는 응시자 책임이며 종료시간 예고 및 시험실에 비치된 시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손목시계 등을 통하여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다기능 스마트 시계 등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.)

<답안지 작성>

-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“컴퓨터용 흑색 사인펜”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**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**(사인펜에 “컴퓨터용”으로 표시되어 있음)을 **지참**하여야 합니다.
 - ※ 답안지에는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 등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번호에 “●”로 표기하여야 하며,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으며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 - ※ 답안지는 훼손·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(|||||)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.

- **답안지 채점은 OMR기기로만 판독하며 판독한 결과 그대로 채점**하므로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. 특히 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시험과목 답안지 표기순서는 **시험문제책 표지의 시험과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국어, 생활영어, 소방학개론 순으로 표기** 하여야 합니다.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위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 되므로 응시자의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시험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,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됩니다. 또한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,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**답안,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(표기)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**하여야 하며, 특히 답안지 교체 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부정행위 등 금지>

-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「소방공무원 임용령」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 >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**5년간 다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**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6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.

1. **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**
2.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**

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 등 다기능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
 -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(표기)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

4. 필기시험 합격자 안내

- 필기시험 합격자는 2017. 11. 14(화)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(<http://fire.ulsan.go.kr> / 시민참여 / 채용정보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- 기타 문의 사항은 울산소방본부 소방행정과(☎ 052-229-452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필기시험장 찾아오시는 길 >

